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김수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김수연

법무법인(유) 광장 연구위원

요약문

S U M M A R Y

전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E.S.G. 채권 발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S.G. 채권은 기업들이 환경·사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금융수단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간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각 사(社)마다 자율적으로 E.S.G. 금융상품(채권) 인증평가 방법론을 마련해 운영해왔지만 현재까지 발행사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E.S.G. 채권 인증평가의 실효성, 변별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절차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2023. 2. 1., 시행)」을 마련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IOSCO가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에게 권고한 요소인 ① 평가정책·절차 문서화, ②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 구축, ③ 정보공개·정보보호, ④ 평가대상기업과의 적절한 소통을 충실히 반영하였다(제4조~제8조). 또한 사후관리 기간 명시, E.S.G. 채권 조달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 사용 시 자금사용 비율, 확인 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 등 사후평가 관련 사항을 보완해 그린워싱 방지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8조~제11조). 비록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제정한 만큼 향후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신용평가사들의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E.S.G. 채권 인증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전문컨설팅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아 발행사가 인증평가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신용평가사 대신 다른 업체와 계약하려 하거나, 신용평가사의 인증평가 업무 비용이 회계법인 등 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목차

CONTENTS

- *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 이 책자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김수연,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3-19-① (2023), ○○면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 ***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I. 들어가며	07
II. E.S.G. 채권 인증평가의 의의	10
1. E.S.G. 채권의 개념 및 발행 현황	10
2. E.S.G. 채권 발행체계와 E.S.G. 채권 인증평가	15
3. E.S.G. 기업 평가 및 신용등급 평가와의 구분	18
III.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특징	21
1. 주요 내용	21
2. 기존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론 검토	25
3. IOSCO의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연구 보고서』	30
IV. 시사점	33
참고문헌	36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I.

들어가며

- 최근 E.S.G. 경영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EU 등 주요국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인프라 마련에 분주
 -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를 의미¹⁾
 - E.S.G.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대상 기업의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등의 권고에 연기금, 대형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적극 동조하면서 확산
 - E.S.G.는 2005년 UN Global Compact가 발간한 ‘Who Cares Wi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는 바,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 등이 기업 투자시 E.S.G.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작성
 - 이후 2006년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인 E.S.G.까지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²⁾가 마련되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이에 서명하면서 E.S.G.가 급속도로 확산
 - 2022년 3월 31일 기준 UN PRI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는 총 4,395개사로 이들의 운용자금(AUM)은 약 121.3조 달러로 추산

1) E.S.G.는 전 세계적으로 명확하게 일률적으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 기관, 단체의 목적 및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 UN PRI, Sustain Stock Exchange Initiative, Nasdaq 등 주요 기관에서 E.S.G.를 정의한 요소를 살펴보면 투자 의사결정, 장기 이익, 재무적 가치, 경영 리스크,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KRX E.S.G. 포털 홈페이지(<https://esg.krx.co.kr/>) 참조.

2) UN PRI 6대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우리는 E.S.G. 이슈를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2. 우리는 능동적인 보유자로서 E.S.G. 이슈를 자산보유 정책 및 투자에 반영한다. 3. 우리는 투자대상 기업에게 E.S.G. 관련 항목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투자업계 내부에서 본 원칙의 도입과 이행을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원칙 이행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 6. 우리는 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내역과 진행경과 상황을 공시한다. UN PRI 홈페이지(<https://www.unpri.org/about-us/about-the-pri>) 참조.

-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 투자은행 및 신용평가회사 중심으로 상품 개발 및 투자 의사 결정에 E.S.G.를 적극 반영하면서 E.S.G. 관련 기준 도입 논의를 촉발, 주요 국가들은 E.S.G. 투자 확산에 맞춰 Taxonomy, E.S.G. 공시 등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 및 그린워싱(Greenwashing)³⁾ 방지를 위한 규제 내지 기준을 마련하거나 마련 중
 - EU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을 발표한 이후, 2020년 7월 녹색분류체계 법률(Taxonomy Regulation) 제정, 2021년 3월 지속가능 금융공시 법률(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발효, 2022년 11월 기업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2022년 2월 EU Commission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공급망 실사) 지침안(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제안⁴⁾
 - 미국 SEC는 2022년 3월 증권등록신고서 및 정기 공시사항에 기후 관련 리스크 항목을 포함시키는 공시규칙(Regulation S-K, Regulation S-X) 개정안⁵⁾ 및 2022년 5월 E.S.G. 펀드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규칙안⁶⁾과 E.S.G. 펀드 이름 규칙안⁷⁾을 발의

-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규제 및 기준을 마련하는 중으로 현재까지 국내 E.S.G. 관련 규제는 EU와 같이 법률 등과 같은 경성규범이 아닌 가이드라인 등과 같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형태로 도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
 - 2020년 12월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그린워싱 채권이 시장에 출회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 신뢰성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 이후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녹색 프로젝트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인 ‘적합성 판단’ 절차를 신설하고 외부검토, 적합성 판단 등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검토기관’의 등록요건 신설 및 기존 권고사항이었던 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 2021년 12월 30일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

3)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 실제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상품, 기술, 투자 등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홍보하는 것을 의미.

4) EU는 구속력이 부여되는 입법체계로 Regulation과 Directive를 운용. Regulation은 EU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입법화할 필요 없이 Regulation 그대로 EU 회원국에 적용되나, Directive는 회원국에게 자국내 입법절차를 통해 Directive 내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

5)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Press Release(2022.3.21.).

6) SEC Proposes to Enhance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 About E.S.G. Investment Practices, SEC Press Release(2022.5.25.).

7) SEC Proposes Rule Changes to Prevent Misleading or Deceptive Fund Names, SEC Press Release(2022.5.25.).

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발표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를 신설(2021.4)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수립 근거 마련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 사회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인 녹색 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 부문으로 구성,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 2022년 12월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원자력 연구·개발 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 등을 추가 및 보완
- 그 밖에 2021년 1월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발표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2021년 12월 국내 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평가 대응을 위해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 항목 61개⁸⁾에 대한 「K-ESG 가이드라인 v 1.0」 및 2022년 12월 EU 등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로부터 수출 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

□ 본 보고서는 최근 정부의 E.S.G. 관련 기준 내지 가이드라인 도입 추세 속에 E.S.G. 채권 인증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2023.1.13. 제정, 2023.2.1. 시행)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 먼저 E.S.G. 채권에 대한 개념 및 발행요건·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인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검토와 함께 신용평가사의 E.S.G. 금융상품(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와 기업 E.S.G. 평가 및 신용등급 평가시 반영하는 E.S.G. 요인 간 구분을 통해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E.S.G. 채권 관련 규제 체계 및 신용평가사 업무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확인
- 이후 기존 신용평가회사의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론과 아울러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영향력 등을 살펴보고, 동 가이드라인 제정 시 적극 반영했다고 소개된 IOSCO의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연구 보고서」를 함께 검토

8)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의 3000여 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도출.

II.

E.S.G. 채권 인증평가의 의의

1. E.S.G. 채권의 개념 및 발행 현황

□ E.S.G. 채권이란 발행자금이 친환경 또는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

-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지속가능연계 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이라 지칭되며 시장에서는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채권, 사회공헌 채권 등으로도 불림⁹⁾
- E.S.G. 채권에 대한 법적 요건은 없으나, 보통 조달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사후 보고 등과 관련해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A)가 규정한 E.S.G. 채권 원칙 등에 부합할 경우 E.S.G. 채권으로 분류

□ E.S.G. 채권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

- 녹색채권: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프로젝트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제자본시장협회는 2014년 녹색채권 원칙(The Green Bond Principles, GBP)을 발표
 -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자발적인 절차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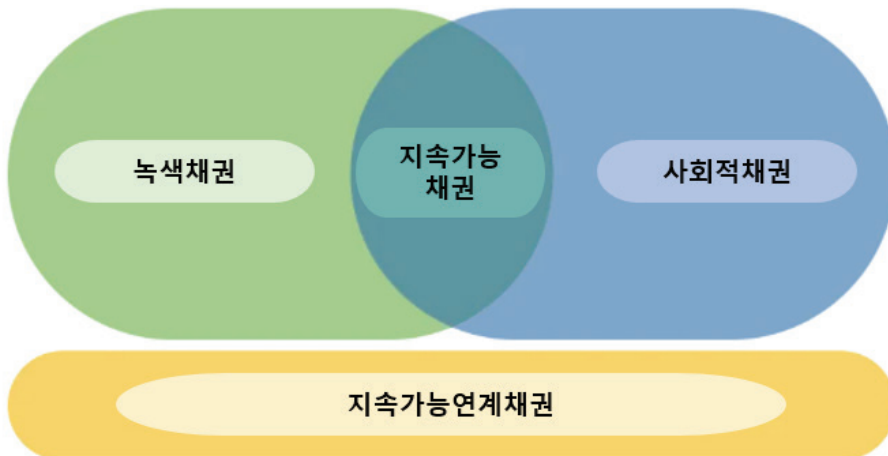
⁹⁾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https://sribond.krx.co.kr/>) 참조.

- 채권의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도록 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 관리, ④ 보고에 걸쳐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녹색채권 원칙은 발행사로 하여금 상기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명문화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채권 발행 전 외부검토키관을 선정해 핵심 요건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채권 발행 후에는 외부감사인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녹색채권 조달자금이 적격 녹색 프로젝트에 배분되는지 검증하도록 권고
- 또한 기후채권 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 CBI)에서 발표한 기후채권 기준(The Climate Bond Standards: CBS)에 따라 발행된 채권 등도 포함
- 녹색채권 세부 범주에는 기후채권, 블루(블루 경제 즉 해양 에너지 개발, 지속가능 어업 관련)채권, 전환채권 등이 있음
- 사회적채권: 사회 가치 창출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제자본시장협회는 2017년 사회적 채권 원칙(The Social Bond Principles, SBP)을 마련
 - 사회적채권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 촉진을 위해 사회적 채권 발행 절차를 명시한 자발적인 절차 가이드라인으로 녹색채권 원칙과 동일하게 조달자금이 적격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되도록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 관리, 보고에 걸쳐 사회적채권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권고
 - 사회적채권의 예로는 Covid 대응 채권, 저가 주택 공급 채권 등이 있음
- 지속가능채권: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국제자본시장협회는 2017년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 SBG)을 발표
 - 지속가능채권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지속가능채권 발행절차 등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으로 기존 녹색채권 원칙과 사회적채권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 내용을 동일하게 중첩적으로 적용
-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E.S.G.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재무적·구조적 측정이 변경될 수 있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과 차이¹⁰⁾

10) 홍지연, "글로벌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시장 현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2-1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2. 1~2쪽 참조.

-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기업의 E.S.G. 핵심성과지표(KPI)에 기반한 지속가능성과목표(SPT)를 설정하여 달성 여부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특징
- 지속가능연계채권은 발행 당시 E.S.G. 관련 적격 프로젝트 없이도 발행이 가능하며 자금사용 용도에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E.S.G. 관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기존 E.S.G. 채권과 구분
- 국제자본시장협회는 2020년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구조, 발행방식 등을 명시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인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 SLBP)을 마련
 - ①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② 지속가능성과목표(SPT), ③ 채권의 특성, ④ 보고, ⑤ 검증, 5개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 원칙은 KPI 선정 근거(관련성, 중요성), SPT 설정 동기(의지 수준, 전략기획과 벤치마크 방식의 일관성), 채권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의 변경 가능성과 예정된 사유(Trigger event), 채권 발행 후 보고 및 독립적인 검증에 대한 계획, 채권자가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을 발행사가 공시하도록 권고

〈E.S.G. 채권의 유형〉



〈E.S.G. 채권 기대효과〉

기업	투자자	사회
① E.S.G. 경영 고도화 촉진 ▷ E.S.G. 외부평가 및 인증 과정을 통해 E.S.G. 경영 체제 정비 및 E.S.G. 채권 발행 여부는 E.S.G. 활동 평가항목의 지표로 활용 ② 기업 이미지 제고 ③ 투자자금 조달에 용이 ▷ 국내외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E.S.G. 투자 확대 추세	① 투자 수익 ② 지속가능성장 기여 및 지속가능 프로젝트 의무 투자수요 충족에 활용 ③ 대체투자를 통한 위험관리 ▷ E.S.G. 채권은 대체투자 포함	① 환경보호에 기여 ② 지속가능성장 견인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사회책임투자채권(<https://sribond.krx.co.kr/>)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국내 E.S.G. 채권 발행도 급증

- MSCI에 따르면 2014년 19개국 13개 통화로 약 284억 달러가 발행되었던 E.S.G. 채권은 2021년 75개국 34개 통화로 약 1조 달러가 발행되며 35배 이상 증가¹¹⁾
 - 그간 E.S.G. 채권은 녹색채권 중심으로 발행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채권 발행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2021년 이후에는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의 결합인 지속가능채권 및 지속가능연계채권¹²⁾ 발행도 점차 증가세
- 우리나라에서도 E.S.G. 채권 발행이 2018년 1.25조원에서 2021년 52.3조원으로 크게 증가
 - 글로벌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녹색채권에 비해 특히 사회적채권 발행이 활발
 - 2022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엔데믹 상황에서 금리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S.G. 채권 발행액이 약 19.2% 감소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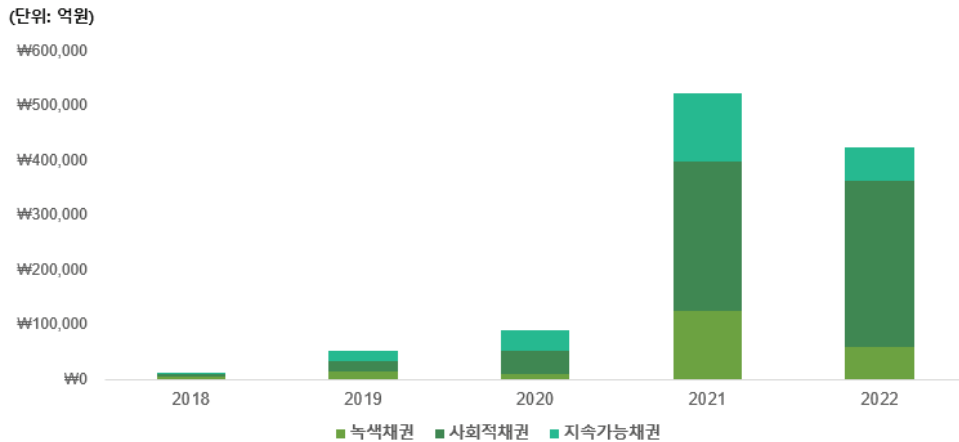
11) MSCI 홈페이지 참조(<https://www.msci.com/esg-101-what-is-esg/navigating-complexities-of-esg-bonds>,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E.S.G. Bonds).
 12) 국내에서 아직까지 지속가능연계채권이 발행된 바가 없음. 홍지연, "글로벌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시장 현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2-19호, 자본시장연구원(2022), 1-2쪽 참조.
 13) 조정삼·최태양·조병준, 2022년 E.S.G. 채권 발행동향 분석,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2023.3.2.).

〈전 세계 유형별 E.S.G. 채권 발행 현황〉



출처: Moody's E.S.G. Solutions, Environmental Finance Bond Database

〈국내 유형별 E.S.G. 채권 발행 현황〉



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MBS) 제외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신용평가

- 이처럼 E.S.G. 채권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국내 E.S.G. 채권이 관련 규제 미비로 그린워싱 문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정부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 도입을 추진
- 기존 한국거래소는 E.S.G. 채권(SRI 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절차 규정을 통해 채권 발행 전 외부평가(검증 내지 인증평가)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었지만 불충분하다는 비판

- 즉 발행 후 보고서 외부검토를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¹⁴⁾ 투자자 입장에서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과연 E.S.G. 적격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 제기
- 이에 환경부, 금융위원회 등은 주요 국제기준·원칙을 참고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판단 및 사전·사후 외부검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
- 한편 E.S.G. 채권 인증 관련 외부평가와 관련해 2023년 1월까지 국내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가 부여한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등급 결과가 모두 1등급으로 확인되면서 실효성 내지 변별력 등에 대해 문제 제기
- 국내 신용평가회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발행사마다 1등급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기존 신용등급이 우수했던 발행사들이 주로 E.S.G.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다, 발행사의 향후 계획을 중점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발행사의 계획만을 놓고 부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어렵다는 의견¹⁵⁾
- 이에 금융감독원 등은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함에 있어 사후관리를 포함한 계약 체결, E.S.G. 채권 인정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와 함께 E.S.G. 평가 업무 일반에 적용되는 평가자 독립성 강화, 이해상충 방지 등을 반영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

2. E.S.G. 채권 발행체계와 E.S.G. 채권 인증평가

- 현재 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은 국내 녹색채권의 발행요건 및 절차 즉 녹색채권 발행체계에 대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년 12월 제정,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규율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즉 국가 주도로 개발한 자체 분류체계(Taxonomy)를 녹색채권에 적용(적합성 판단)한 최초 사례로, 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 원칙, 기후채권 이니셔티브의 기후채권 기준 등을 참고하여 수립
 - 특히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발행사에게 채권 발행 전후 단계에 걸쳐 관리체계, 적합성 판단, 자

14)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시한 각종 원칙에서는 E.S.G. 채권에 대한 사후 제3자 외부검토를 권고.

15) E.S.G.채권은 다 1등급? 유명무실한 신평가 등급 선정, 이데일리(2021.8.4.); “했다하면 최고등급”...E.S.G. 인증평가, 실효성 있나?, 딜사이트(2021.4.1.).

금 배분, 환경영향 등에 대한 외부검토기관의 검토·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녹색채권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는 사무소의 국내 소재, 독립된 외부검토 담당 조직체계 구축, 환경 및 금융 분야별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각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자 등) 보유 및 외부검토에 필요한 직업적·윤리적 원칙 준수(ECAI, ISAE 3000, ISO 17021, ISO 1405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리 하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

○ 한편 「한국형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한국형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은 제정 전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채권은 기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원칙 내지 한국거래소 E.S.G. 채권(SRI 채권) 전용 세그먼트 등록절차 규정에 따라 발행

- 비록 정부가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녹색채권에 한정해 적용될 수 있는 요소(적합성 판단, 외부검토기관의 환경 전문성 등)를 제외하고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E.S.G. 채권 발행시 적용되는 절차와 체계를 정립한 것인 만큼 향후 사회적 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발행 시 발행자와 시장에 일종의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녹색채권 발행 전 단계

순서	주요 내용	주요 결과물
1. 발행계획 수립	[발행자] ▷ 자금조달 수요 확인 ▷ 주관사 선정 및 기업 실사 등 업무 협의 ▷ 신용등급 평가	▷ 발행계획
2. 관리체계 수립	[발행자] ▷ 관리체계 작성 • 회사 소개 및 녹색채권 개요, 관리체계 목적, 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	▷ 관리체계
3. 적합성 판단 요청	[발행자]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확인 요청	▷ 적합성 판단 요청서
4. 사전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 관리체계 외부검토 ▷ 적합성 판단 확인	▷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 녹색채권 관리체계 • 적합성 판단 확인

○ 녹색채권 발행 후 단계

순서	주요 내용	주요 결과물
5. 채권 발행	[발행자] ▷ 증권신고서 제출 • 관리체계 공시, 사전 외부검토 보고서 공시	증권신고서
6.1 사후(연례) 보고	[발행자] ▷ 사후(연례) 보고서 공시 • 자금배분 보고(연 1회 이상), 환경영향 보고(필요시)	사후(연례) 보고서
6.2 사후(최종) 보고	[발행자] ▷ 자금배분 완료 후 사후(최종) 보고서 공시 • 자금배분 보고, 환경영향 보고, 적합성판단 보고	사후(최종) 보고서
7. 사후 외부검토	[외부검토기관] ▷ 사후(최종) 보고서 외부검토 • 자금배분 검토, 환경영향 검토, 적합성판단 최종 확인	사후 외부검토 보고서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앞서 설명한 녹색채권 발행절차 가운데 사전·사후 외부검토 단계에서 신용평가회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기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을 제시한 것

- E.S.G. 채권 인증평가란 채권 발행자금의 운영, 관리, 집행 및 사후보고와 관련하여 E.S.G. 채권 관리체계 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등 준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을 의미
- E.S.G. 채권(E.S.G. 금융상품) 인증평가는 검토의견, 검증, 인증, 등급 평정 4가지 유형¹⁶⁾으로 구분되는 바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외부검토 단계 가운데 특히 신용평가회사의 인증평가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검토의견(Second Party Opinion)은 보통 전문컨설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E.S.G.채권 표준관리체계를 녹색채권 원칙 등에서 규정한 조달자금의 사용,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조달자금 관리, 보고 4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
 - 검증(Verification)은 회계법인 등이 발행사 관리체계가 내부·외부 표준·기준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것

16) 이승태 권진혁,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ESG 채권 인증평가를 중심으로, 스페셜 리포트, NICE신용평가(2021.7.21.); ICMA, 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 & Linked Bonds External Review(2022.6) 참조.

- 인증(Certification)은 기후채권 인증기관과 같이 공인된 제3자가 녹색표준 등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
- 등급 평정(Rating)은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들이¹⁷⁾ E.S.G. 채권의 준거기준 부합 정도를 수치화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검토의견, 검증, 인증과 같은 평가와는 달리 E.S.G. 채권 간 비교가 가능
- 한편 E.S.G. 채권(특히 녹색채권) 인증평가의 경우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상 외부검토 단계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신용평가는 외부검토기관으로 등록이 이루어질 필요

3. E.S.G. 기업 평가 및 신용등급 평가와의 구분

- E.S.G. 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기업 자체에 대한 E.S.G. 평가와 금융상품에 대한 인증평가인 E.S.G. 채권 인증평가로 구별
 - E.S.G. 기업 평가(평가등급/평가점수)는 대상 기업의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점수 또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
 - E.S.G. 평가기관으로는 MSCI, Sustainalytics, Refinitiv,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등
 - 평가회사는 대부분 기업으로부터 평가를 의뢰받지 않고 대부분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정보로 제공(구독료 모델)
 - E.S.G. 평가의 경우 평가기관별 평가 철학, 관점 및 목적 등에 따라 평가 항목, 가중치,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있어 고유의 평가항목과 방법론을 적용하는데 대다수 평가기관이 사업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 외부 공개된 자료를 입수해 분석, 이로 인해 동일한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별 평가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E.S.G.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¹⁸⁾
 - 반면 E.S.G. 채권 인증평가(인증의견/인증등급)는 E.S.G. 채권 발행자금의 운용, 관리, 집행 및 사후 보고 등이 준거가 되는 E.S.G. 채권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의견

17) 신용평가회사는 E.S.G. 채권 인증평가에 대해 등급 부여 형태에 한정하지 않고 인증 내지 검증 의견 형태로도 제공.

18) 보다 자세한 내용은 Why E.S.G. ratings vary so widely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MIT Management Sloan School(2019.8.25.), 또는 Berg, Florian and Kölbel, Julian and Rigobon, Roberto,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August 15, 2019). Forthcoming Review of Finance, 참조.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100대 기업(2020년 기준) 55개사(등급비교가능기업)의 MSCI, Refinitiv, 한국ESG기준원 간 E.S.G. 등급 격차가 평균 1.4단계, 최대 5단계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2021.4).

- 국내외 주요 E.S.G. 채권 인증평가기관으로는 S&P, CICERO,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안진회계법인 등
 - E.S.G. 채권 인증평가 대부분 발행사 의뢰로 평가기관이 발행사와 평가계약을 체결하고 발행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평가
 - E.S.G. 채권 인증평가는 활용 목적이 분명한데다 평가방법론 또한 국제자본시장협회의 E.S.G. 채권 원칙 등을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어 E.S.G. 기업평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평가기관별 차이가 미미
- E.S.G. 기업 평가 시 해당 기업이 E.S.G.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며, 반대로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평가 시에도 평가항목으로 발행사 자체에 대한 E.S.G. 평가가 일부 반영되기도 함¹⁹⁾
- 한편 E.S.G. 채권 인증평가는 신용평가사가 기업 등의 신용등급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E.S.G.와도 구분할 필요
- 신용등급이란 발행사 및 발행물 등의 장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의견
 - 현재 신용등급 평가 시 기타 고려요소 및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 모델 세부요소 항목에 E.S.G. 요소를 반영²⁰⁾
 - 보통 신용평가시 환경요인과 사회요인은 산업위험과 경쟁지위 항목을 통해 사업위험 평가에 반영되며 이는 개별 기업의 현금흐름 변동성 확대, 자산가치 하락(좌초자산 등)을 초래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자본 시장 접근성 하락으로 유동성 위험을 높여 사업·재무 위험 전반에 영향
 - 한편 지배구조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영향을 미치며 그 속성상 사업·재무위험으로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 모델에 직접 적용된다기보다 기타고려요소의 경영관리 범주에서 고려
 - 신용평가 측면에서 E.S.G. 요인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증대된 것은 사실이나 신용평가에 있어 E.S.G. 요인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며, 이전부터 신용도에 미치는 중요성 정도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었던 요소라는 점에 주의²¹⁾
 - E.S.G. 요인이 신용평가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되는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E.S.G. 대응능력이 높더라도 반드시 높은 신용등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19) 자세한 사항은 III. 2 기존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론 검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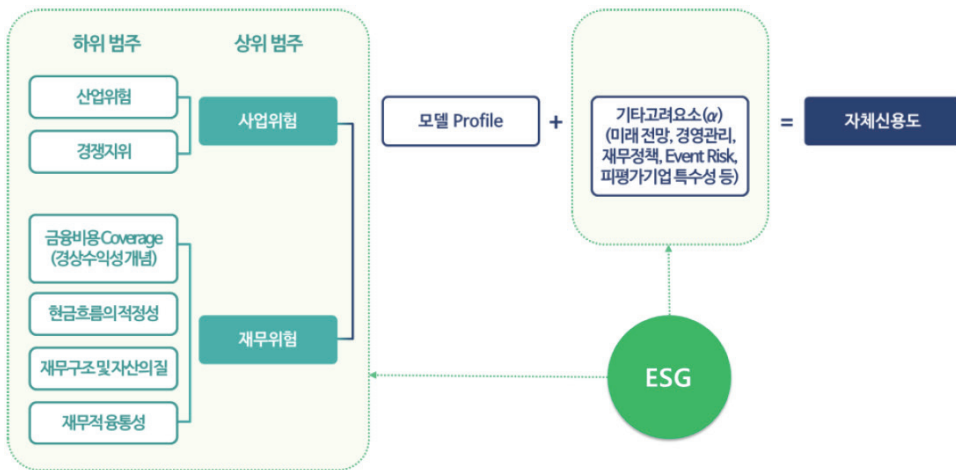
20) 박세영·이경화, ESG와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2021.10.12.) 참조.

21) 양진수, E.S.G. 태동의 시대, 신용평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2020.3); 성호재·정승재·정혁진, KIS 신용평가 일반론 - ESG 위험의 분석(제정안), 한국신용평가(2022.4) 참조.

E.S.G. 대응능력이 낮더라도 높은 신용등급 부여가 가능²²⁾

- 즉 E.S.G. 요소가 반드시 신용등급 변동요인이 되거나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
- 즉 E.S.G.는 신용등급 평가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E.S.G.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

〈신용등급 결정 절차상 반영되는 E.S.G. 요인〉



출처: NICE신용평가

22) 예를 들어 도요타, GM의 무디스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은 각각 A1/stable, Baa3/Stable로 도요타가 높았지만, 무디스 산하 E.S.G. 평가기관인 Vigeo Eiris의 E.S.G. 평가점수(100점 만점)는 각각 42점, 45점으로 GM이 높았음.

Ⅲ.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특징

1. 주요 내용

□ 2023년 1월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2023. 2. 1. 시행)」을 제정해 발표²³⁾

○ 이번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이 E.S.G. 감독의 일관성 있는 설계와 추진을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 E.S.G. 감독 TF'의 8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E.S.G. 채권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완료)과 함께 회사채 분야 주요 추진 과제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E.S.G. 감독 TF'의 8대 실천과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업 분야: ① 기업의 E.S.G. 공시 강화(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 ② 상장법인 E.S.G. 공시체계 효율화(금융위원회와 협의)
- 펀드 분야: ③ E.S.G. 펀드 증권신고서 공시기준 마련(공시 서식 개정)
 - ④ E.S.G.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 공시기준 마련(금투업 시행세칙 개정)
- 회사채 분야: ⑤ E.S.G. 채권 증권신고서 작성기준 마련(공시 서식 개정) - 완료
 - ⑥ E.S.G. 채권 인증평가 기준 정립(가이드라인 제정) - 완료
- 금융투자업자 분야: ⑦ 금융회사 E.S.G.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가이드라인 제정)
 - ⑧ E.S.G. 금융상품 영업행위 감독기준 마련(적합성 보고서 개정)

2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2023.1.15.).

- 2022년 7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신용평가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진행, 최종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이 아닌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금융투자협회의 법규정보시스템 모범규준 부문에 동 가이드라인을 게시
- 금융감독원은 금번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 평가에 대한 신뢰가 증대되어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의견을 피력
 - 그린워싱 방지: 신용평가사가 발행회사와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 계약시 녹색 프로젝트 등에 자금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사용에 대한 검증 사항을 포함
 - 기존 E.S.G. 채권 발행 후 제3자 검증 의무 없이 발행회사 스스로 해당 자금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E.S.G. 채권이지만 E.S.G. 관련 프로젝트 이외의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는 그린워싱 발생 우려가 높았고, 투자자 신뢰도 저조
 - 인증평가 활용도 제고: 신용평가사 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녹색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사용 비율, 신용평가사의 확인 여부를 평가 보고서에 포함하고 그 외에 투자 시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도 기재
 - 기존에는 각 신용평가사마다 E.S.G. 채권 인증등급 부여시 사용되는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사용 비율기준이 상이(1등급 부여 기준: A 신용평가사 85% 이상, B 신용평가사 90% 이상 등)해 비교가 어려웠음.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그 목적, 적용 대상, 주요 용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
 - 목적(제1조)
 - E.S.G. 채권 인증평가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 E.S.G. 채권 인증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 고객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 적용 대상(제1조)
 - 신용평가회사와 신용평가회사 임직원(계약직 및 임시직 등 포함)
 - E.S.G. 채권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등은 동 가이드라인상 적용 대상에 미포함

○ 용어 정의(제2조)

- E.S.G. 채권: E.S.G. 채권 원칙 등(국제기구 또는 신뢰할만한 국제단체가 제정한 원칙,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으로 규정
 - 일반적으로 E.S.G. 채권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개선과 같은 사회책임투자자와 관련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
 - 현재 E.S.G. 채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도입해 E.S.G. 채권을 정의 중
 - 예를 들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한 녹색채권은 동 가이드라인 상의 E.S.G. 채권에 해당
 - 한편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은 일반적으로 E.S.G. 채권으로 포함해 논의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 E.S.G. 채권 정의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E.S.G. 적격 프로젝트 기반 없이 발행되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 가이드라인 상의 모든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필요²⁴⁾
- E.S.G. 채권 인증등급 및 의견: E.S.G. 특성 등과 관련하여 정의된 순위기준 등을 사용하여 기호, 숫자 등으로 표시한 등급 또는 의견을 부여하는 것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인증평가 각 단계별 신용평가회사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 계약 체결(제9조)

- 평가대상회사와 평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E.S.G. 채권 원칙 등을 기재하고, 평가대상 기간, 등급의 사후관리 기간 등을 명시
- E.S.G. 채권 원칙 등에 따라 채권 발행기업이 특정 목적에 자금을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신용평가사의 평가업무 범위에 사용내역 확인 업무를 포함

○ 평가등급 부여(제10조)

- 녹색 프로젝트 등 E.S.G.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투입 비율이 조달자금의 일정 비율(최하 사용비율)

24) 지속가능연계채권의 경우 역시 발행 전 외부검토기관이 관련 있는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선정된 핵심성과지표(KPI)의 관련성, 확고함, 신뢰성, 제시된 지속가능성 과목표(SPT)의 근거 및 의지 수준, 선정된 벤치마크와 기준점의 관련성과 신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전략의 신빙성을 평가하도록 권고 받고 있으므로, E.S.G. 인증평가업과 관련해 정책 등 문서화, 독립성, 정보 공개 및 정보보호 등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보편적인 관점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 지속가능연계채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CMA,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2020.6) 참조.

에 미달한 경우 등급 미부여

- 인증평가시 최하사용비율 적용여부와 적용시 동 비율에 대한 기준을 평가방법론에 기재

○ 평가보고서 기재(제11조)

- E.S.G. 채권 인증등급의 의미, 발행 이후 평가여부, 발행 후평가기간, 활용시 유의사항, 이해상충 가능성 있는 업무 유무 및 영향을 명시
- E.S.G.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금사용여부, 자금사용 비율 및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
- E.S.G. 채권 발행 후 인증평가 등급 조정시 조정 전후 등급을 비교(평가자명 기재)해 표시

□ 한편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국제증권감독기구)가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에게 구축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 문서화, 독립성, 정보공개·정보보호, 평가대상기업과의 의사소통 관련 요소를 반영해 수립

○ 문서화(제4조): E.S.G. 채권 인증등급 제공을 위한 평가정책과 절차를 채택해 문서화

- 방법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 평가방법론은 주기적으로 타당성 검토
- 방법론 변경 전 변경사항과 E.S.G. 채권 인증등급·의견에 미치는 중요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평가대상 회사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
-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되는 시점까지 E.S.G. 채권 인증등급·의견을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 등급평가·의견의 근거가 되는 평가업무 기록 유지
- 평가업무 수행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 등 자원 유지
- 평가업무 담당인력의 전문성, 적격성, 정직성 확보

○ 독립성(제5조): 독립성 준수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절차를 마련해 문서화, 잠재적 이해상충 이슈를 식별해 관리·완화·공시

- 이해상충 문제를 식별해 제거·관리·완화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한 정책·절차를 마련해 문서화
- 이해상충 문제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실시한 조치 내역을 평가보고서에 기재 또는 공개
- 신용평가사의 다른 업무가 E.S.G. 채권 인증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책·절차 마련
-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 있는 금융상품 거래 직원은 평가업무에서 배제
- E.S.G. 채권 인증평가 담당 직원에 대한 수익금액 기준 평가나 보상이 인증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 평가계약에 따른 비밀보장,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의)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보상계약 성격, 기타 사업관계, 금융거래관계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기재 또는 공개
- 정보 공개(제6조): 이해상충 위험이 없고 평가계약상 보안 준수를 전제로 정보 이용자에게 방법론, 업무 절차를 공시
 - 정보 공시 시 평가대상회사의 영업상 민감성을 고려
 - 등급 정보 이용자가 E.S.G. 채권 인증등급 의견의 목적과 등급 정보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E.S.G. 채권 인증등급의 기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인증등급 평가 절차와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
- 정보 보호(제7조): 평가대상회사의 비공개정보 보호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 문서화
 - 법규 또는 평가 계약상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 보안 유지 및 비공개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조건을 공개
- 의사소통(제8조): 정보수집시 충분히 소통하고, E.S.G. 채권 인증등급 등의 객관성을 유지하되 평가대상회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 특히 평가대상회사에게 등급산출 결과에 대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
 - 이미 공개된 자료 및 사전 제출받은 자료를 포함해 수집한 정보는 평가대상회사에 확인
 - 신용평가사는 정보요청 시기와 방법, 검토가능 시기와 방법 등을 계약 시 문서화
 - E.S.G. 채권 인증평가 결과를 외부 공개하기 전 평가결과 및 등급 산정의 주요 근거를 평가대상회사에 전달하고 평가대상회사가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제공

2. 기존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론 검토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도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각 사마다 E.S.G. 금융상품(채권) 인증평가 방법론을 마련해 운영
- 각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들의 E.S.G. 채권 인증평가 방식은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나 널리 통용되는 국제자본시장협회의 E.S.G. 채권 원칙에 기반해 마련한 만큼 적격 프로젝트 투입 자금 비율, 조달 자금 관리 및 공시 등 기본적인 체계는 유사

□ 한국기업평가²⁵⁾

- 서비스명: E.S.G. 인증 평가
- 평가대상: E.S.G. 적격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금융상품으로 채권을 비롯해 펀드, 대출, 구조화금융상품, 모집방식, 변제순위 구분하지 않으며 메자닌, 주식 등도 평가 대상
- 등급부여 체계 : 5개 평가요소에 대해 각각 평가한 후 요소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정,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등급(5단계) 부여
 - 녹색채권: G1(매우 우수), G2(우수), G3(보통), G4(미흡), G5(취약)
 - 사회적채권: S1~S5, 지속가능채권 ST1~ST5
- 평가요소
 - ① 조달자금의 사용(30%)
 - 프로젝트 적격성(필수요건)
 - 조달자금 대비 투입자금 비율(90% 이상(최고), 80~90%(매우 우수), 70~80%(우수), 50~70%(보통), 50% 미만(미흡), 투입자금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최종 등급으로 G4 또는 G5를 부여하거나 등급 부여 자체를 거절할 수 있음): 투입자금 비율만큼 배점
 - ②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20%)
 - 프로젝트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의 합리성과 명확성(10%)
 - 적절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준수 및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10%)
 - ③ 조달자금의 관리(20%)
 - 조달자금의 분배 계획 및 집행의 적정성(10%)
 - 조달된 자금의 추적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의 적정성(10%)
 - ④ 사후 보고(20%)
 - 공시 절차의 적정성(10%)
 - 공시 내용의 적절성과 신뢰성(10%)
 - ⑤ 발행사의 E.S.G. 내재화 정도(10%)
 - 기존 E.S.G. 평가와 유사한 형태의 접근법으로 발행사의 E.S.G. 관련 경영방침, 이슈 발생시 대응정

25) 김영규·송치원·염성오, ESG 인증 평가방법론, 한국기업평가(2021.1.4.) 참조.

도, 관련 위험관리 시스템 존부, E.S.G. 관련 활동 여부 등

○ 기타

- 발행사의 E.S.G. 내재화 정도를 평가항목(10%)으로 편입해 반영
- 채권 발행 후 사후 평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사후보고 즉 프로젝트별 분배금원, 계획한 분배금원 대비 실제 분배금원, 미분배금원의 투자원칙 및 실제 투자금원, 사후보고 시점까지 실현된 환경·사회·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영향(구체적 측정 지표를 포함한 정량적 요소 및 정성적 요소) 등에 대한 공시를 평가항목에 반영

□ 한국신용평가²⁶⁾

○ 서비스명: E.S.G. 금융 인증평가

○ 평가대상: E.S.G. 채권·대출·펀드, 기타 이에 상응하는 E.S.G. 금융상품(단 주식은 제외)

○ 등급부여 체계: E.S.G. 적격 프로젝트 배분율을 기준으로 한 1단계 평가(E1~E5)와 발행사의 운영 및 관리 체계, 공시에 대한 2단계 평가(M1~M5)를 조합해 최종 등급 산정(E.S.G.1~E.S.G.5)²⁷⁾

○ 평가요소

- ① 1단계: 발행기업이 E.S.G. 채권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적격성 검토, 국제기준이 정한 E.S.G. 적격 프로젝트인지 확인한 후 총 조달자금 중 적격 프로젝트에 자금이 얼마나 배분되는지 판단
 - 조달자금 중 90% 이상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시 E1, 70~89% E2, 50~69% E3, 30~49% E4, 10~29% E5, 10% 미만은 등급부여 대상에서 제외
- ② 2단계: E.S.G. 채권 발행계획과 E.S.G. 채권 프레임워크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아래 4개 평가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해 가중평균 합계 포인트(~20~40~60~80~100)를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등급 부여, M1(탁월)~M5(취약)
 -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의 타당성과 객관성(30%)
 - 조달자금 관리 및 프로세스 구축(30%)

26) 김형수·김병진·안광휘·이상은,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 한국신용평가(2020.6) 참조.

27) 채권은 GB1~GB5(환경), SB1~SB5(사회), STB1~STB5(지속가능), 대출은 GL1~GL5(환경), SL1~SL5(사회), STL1~STL5(지속가능), 펀드는 GF1~GF5(환경), SF1~SF5(사회), STF1~STF5(지속가능)로 표시.

- 프로젝트 추진 및 자금관리에 대한 사후보고 및 공시(30%)
- 발행기업의 환경·사회적 공헌 활동(10%)
- ③ 3단계: 1단계와 2단계 산정 결과를 조합해 최종 등급 산정
 - 최종 등급결정 Matrix

구분		2단계				
		M1	M2	M3	M4	M5
1단계	E1	E.S.G. 1	E.S.G. 2(1)	E.S.G. 3(2)	E.S.G. 4(3)	E.S.G. 5(4)
	E2	E.S.G. 2(1)	E.S.G. 2	E.S.G. 3	E.S.G. 4	E.S.G. 5
	E3	E.S.G. 3(2)	E.S.G. 3	E.S.G. 3(4)	E.S.G. 4(5)	E.S.G. 5
	E4	E.S.G. 4(3)	E.S.G. 4	E.S.G. 4(5)	E.S.G. 5	등급 외
	E5	E.S.G. 5(4)	E.S.G. 5	E.S.G. 5	등급 외	등급 외

○ 기타

- 2단계에서 발행사 자체 E.S.G. 수준에 대한 평가가 반영
- 사전평가 외에 발행기업이 당초의 계획에 따라 조달자금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하였고, 적격 프로젝트와 조달자금의 선정,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적시에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규정

□ NICE신용평가²⁸⁾

- 서비스명: E.S.G. 인증평가
- 평가대상: E.S.G. 채권·대출·구조화금융상품·펀드 등(주식, 주식형 펀드는 제외)
- 등급부여 체계: 4개 평가요소에 대해 각각 평가(Scoring 5~1)한 후 요소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종합점수 산정, 이후 기타고려요소(α)를 고려해 등급(5단계) 부여
 - 녹색채권: Green1(매우우량), Green2(우량), Green3(다소우량), Green4(적정), Green5(미흡)
 - 사회적채권: Social1~Social5,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1~Sustainability5

28) 권성철·권진혁, ESG 인증 평가방법론, NICE신용평가(2020.12) 참조.

○ 평가요소

① 프로젝트의 적합성(50%)

- 프로젝트 적격성
- 프로젝트의 환경·사회적 영향
- 적격 프로젝트 자금투입 비중: 85% 이상을 적격 프로젝트에 투입시 매우 우량, 75~85% 우량, 50~75% 다소 우량, 30~50% 적정, 0~30% 미흡으로 판단, 단 프로젝트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적격 프로젝트 자금투입 비중이 적정, 미흡에 해당할 경우 해당 E.S.G. 채권 인증등급의 상한은 각각 Green 4, Green 5로 제한

② 프로젝트 선정의 적정성(20%)

-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10%), 내부통제 시스템(5%), 프로젝트 선정체계의 공시(5%)

③ 자금관리의 적정성(15%)

- 자금 투입 및 관리 계획(5%), 내부통제 시스템(5%), 자금관리체계의 공시(5%)

④ 외부공시의 충실성(15%)

- 공시체계(10%), 공시내용(5%)

⑤ 기타고려요소(α)

- 발행사의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 Controversial Issue(부정적 논란이 되는 이슈) 등을 인증평가 모델의 평가요소와 중복하지 않도록 추가해 반영

○ 기타

- 기본 평가항목 외 기타고려요소(α)를 통해 발행사 자체 E.S.G. 수준에 대한 평가가 반영
- E.S.G. 채권 발행 전 사전 인증평가에 대해 발행 후 사후 모니터링 평가를 정기·수시 평가형태로 수행
- 인증평가를 등급이 아닌 Pass(부합), Fail(미부합) 형태의 인증의견 제공

□ 자체 방법론에 따라 E.S.G. 채권 인증평가를 수행했던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앞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후관리 내지 사후평가 의무화, 최소 E.S.G. 프로젝트 자금 투입비율 공개 등을 비롯해 인증평가 관련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

○ 비록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 내지 지침 형태이지만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만큼 국내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

○ 신용평가사는 동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등급부여 절차에 대한 문서화,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

방법론 공개 등 E.S.G. 평가 일반에 적용되는 주요 원칙을 내재화 하고, 발행사와 인증평가 계약 체결 시 등급의 사후관리 기간 명시 및 E.S.G.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특정 프로젝트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금사용여부, 자금사용 비율, 확인여부를 평가등급에 병기 등 사후평가 관련 사항을 보완해 그린워싱 방지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구축

3. IOSCO의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연구 보고서』

- 2021년 11월 IOSCO는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연구 보고서(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Final Report)』를 발표²⁹⁾
 - IOSCO는 최근 E.S.G. 평가·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E.S.G. 평가·데이터에 대한 규제나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E.S.G. 평가 및 데이터에 대한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
 - E.S.G. 평가·데이터 관련 시장이 2019년 6.17억 달러에서 2021년 10억 달러로 성장세³⁰⁾
 - IOSCO 조사 결과에 따르면 E.S.G. 등급 또는 데이터 산출 방법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E.S.G. 등급·데이터 제공업체 또는 밀접 관계자가 E.S.G. 등급·데이터 피평가회사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상충 우려가 상당한데다 E.S.G. 등급·데이터 제공업체와 피평가회사 간 소통(상호 작용)이 부족하다고 분석
- IOSCO는 보고서를 통해 E.S.G. 평가 및 관련 데이터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데이터 제공회사뿐 아니라 관련 규제감독 당국, E.S.G. 등급·데이터 활용업체(자산운용사 등) 등을 대상으로 10개 사항을 권고
 - (권고 1) 규제감독 당국은 E.S.G. 등급·데이터의 사용,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와 관련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

29) IOSC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Final Report(2021) 참조.

30) Anne-Laure Foubert, No Stopping Its Rise Now, ESG Data Market(2020.3.9.)

- (권고 2)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활용가능한 모든 공개 정보에 기초해 고품질의 E.S.G. 평가·데이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의된 방법론 등을 포함해 그 평가·데이터 산출 절차를 서면화 하여 채택
 - (권고 3)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서면화 하여 채택
 - (권고 4)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잠재적 이해상충 발생 시 공개, 완화, 적절하게 관리, 방지, 식별해 관리
 - (권고 5)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E.S.G. 평가·데이터에 대해 산출 방법론, 절차 등을 포함해 적절한 수준의 공시 및 투명성을 확보
 - (권고 6)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E.S.G. 평가·데이터 관련 회사, 대리인들을 통해 얻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면화 된 절차 및 정책을 마련
 - (권고 7) 시장 참여자들은 내부 절차상 사용되는 E.S.G. 평가·데이터들을 수집해 실사 및 검토(무엇에 대한 등급 평가이며, 어떤 방식을 통해 평가되는지 및 해당 등급·데이터가 사용되는 목적 등)를 수행
 - (권고 8)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피평가회사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수집 절차를 개선
 - (권고 9)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는 E.S.G. 평가·데이터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피평가회사가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소통하며 해결
 - (권고 10)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평가받는 기업은 자국 내 법규를 준수하면서 가능한 선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 절차를 간소화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IOSCO의 『ESG 평가·데이터 제공업체 관련 연구 보고서』 권고 사안(권고 2~6, 8~9)을 반영해 문서화(제4조), 독립성(제5조), 정보공개(제6조), 정보보호(제7조), 의사소통(제8조)으로 명문화
- 금융감독원은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신용평가사를 E.S.G. 데이터 제공업체로 범주화해 IOSCO 보고서 권고를 적용
 - IOSCO는 MSCI, Sustainalytics 등 E.S.G. 기업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E.S.G. 평가·데이터 관련 수수료 구조의 85% 차지하는 ‘구독료 모델’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고 있으나 E.S.G. 채권 인증평가를 수행하는 신용평가사의 경우 ‘발행인 부담 모델’로 차이

- 하지만 E.S.G. 인증평가 역시 E.S.G. 금융상품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국제기준으로서 IOSCO 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
 - 결과적으로 IOSCO의 권고사항 즉 E.S.G. 인증평가 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마련, 평가대상회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보호 체계 구축 및 인증평가 단계에서 평가대상회사와 충분한 의사소통 등이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핵심 요소로 반영

IV. 시사점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그린워싱 채권 출회 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두고 마련된 「한국형 녹색 채권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해될 필요
 -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체계 중 사전·사후 외부검토 단계에서 신용평가회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기준·지침에 대한 권고로 녹색채권의 발행요건·절차를 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세부 부문에 대한 가이드라인
 - 즉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외부검토기관에 대한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녹색채권 여부를 인증평가하는 신용평가사 역시 외부검토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 심사기관을 통한 등록이 필요
 - 현재 사회적·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용평가사가 사회적·지속가능채권에 대한 인증평가를 할 경우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정립된 만큼 향후 사회적·지속가능채권 역시 녹색채권에 준해 외부평가기관 자격요건을 요구할 가능성
 - 한편 현행과 같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만 제정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행사 입장에서는 발행이 보다 용이한 지속가능채권 또는 사회적채권을 발행할 유인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사회적채권 발행과 관련해 신용평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여지

- 기존 자체 방법론에 따라 E.S.G. 채권 인증평가를 수행했던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앞으로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보다 엄격해진 체계 하에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 결과적으로 E.S.G. 채권을 둘러싼 그린워싱 논란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

- 신용평가사들은 등급부여 절차에 대한 문서화,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E.S.G. 평가 일반에 적용되는 주요 원칙을 내재화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내지 사후 평가 의무화, 최소 E.S.G. 프로젝트 자금 투입비율 공개 등을 비롯해 인증평가 관련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
 - 비록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 내지 지침 형태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만큼 국내 신용평가사의 E.S.G. 채권 인증평가에 사실상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판단
- 하지만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업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공백(loophole)으로 인해 E.S.G. 채권 인증평가 전반에 걸쳐 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E.S.G. 채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 제시될 필요
- 일반적으로 E.S.G. 채권성에 대한 적합성 판단 및 사후 검토·확인 등 신용평가사 외에도 전문컨설팅사, 회계법인 등이 수행하는데, 동 가이드라인은 신용평가회사와 그 임직원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
 - E.S.G. 채권 인증이라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신용평가사에 한해서만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할 경우, 시장에서 신용평가사의 인증평가 업무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발행사가 인증평가 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신용평가사 대신 다른 업체를 통해 E.S.G. 채권을 인증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거나, 고도화된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절차를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E.S.G. 채권 인증업무 비용이 회계법인 등 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도 존재
 - E.S.G. 채권 발행의 공정성 강화와 함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동 가이드라인과 같은 유사한 기준이 E.S.G. 채권 인증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
- 한편 신용평가사 및 인증평가 관련 기관들은 비록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 마련한데다 향후 법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³¹⁾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재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 도입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강제성 있는 감독 규정이 아닌 권고 형태의 가이드

31) EU도 European Green Bonds Standard를 법률(Regulation)로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 Clifford Chance, European Green Bond Regulation, Briefings(2022.6.15.).

- 드라인(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통해 E.S.G. 채권 인증평가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하는 것으로 결정
- 금융감독원이 제정 주체인 만큼 사실상 동 가이드라인 영향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앞으로 E.S.G. 채권 발행이 더욱 활발해지고 E.S.G. 관련 금융시스템이 자리잡게 될 경우 동 가이드라인이 규정한 핵심 내용이 의무사항으로 전환될 가능성
 - E.S.G. 평가 및 데이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검토기관은 사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평가 절차와 체계를 구축해 시장 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필요

참고문헌

REFERENCES

- 권성철·권진혁, ESG 인증 평가방법론, NICE신용평가(2020.12)
- 김영규·송치원·염성오, ESG 인증 평가방법론, 한국기업평가(2021.1.4.)
- 김필규, “ESG채권의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포커스 2021-11호, 자본시장연구원(2021)
- 김한조, ESG 등급 평가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현황, 금융투자협회(2021.9)
- 김형수·김병진·안광휘·이상은, ESG 금융 인증 평가방법론, 한국신용평가(2020.6)
- 박세영·이경화, ESG와 신용등급, NICE신용평가(2021.10.12.)
- 성호재·정승재·정혁진, KIS 신용평가 일반론 - ESG 위협의 분석(제정안), 한국신용평가(2022.4)
- 양진수, ESG 태동의 시대, 신용평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2020.3)
- 이승태·권진혁, 글로벌 ESG 평가 현황 및 시사점 - ESG 채권 인증평가를 중심으로, 스페셜 리포트, NICE신용평가(2021.7.21.)
- 조정삼·최태양·조병준, 2022년 ESG 채권 발행동향 분석, KIS Special Report, 한국신용평가(2023.3.2.)
- 홍지연, “글로벌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시장 현황 및 국내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22-19호, 자본시장연구원(2022)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SG 채권에 대한 인증평가 방법과 절차가 보다 투명해집니다(2023.1.15.)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2021.4)
- 이데일리, ESG채권은 다 1등급? 유명무실한 신평사 등급 산정(2021.8.4.)
- 딜사이트, “했다하면 최고등급”...ESG 인증평가, 실효성 있나?(2021.4.1.)
- Clifford Chance, European Green Bond Regulation, Briefings(2022.6.15.)
- IOSCO,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ESG) Ratings and Data Products Providers Final

- Report(2021. 10)
- ICMA, Guidelines for Green,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ility-Linked Bonds External Review(2022.6)
- ICMA, Sustainability Bond Guidelines(2021.6)
- ICMA, 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s(2020.6)
- ICMA, The Green Bond Principles(2021.6)
- ICMA, The Social Bond Principles(2020.6)
- Florian Berg-Julian Kölbel·Roberto Rigobon,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Forthcoming Review of Finance(August 15, 2019)
- SEC Proposes Rules to Enhance and Standardize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SEC Press Release(2022.3.21.)
- SEC Proposes to Enhance Disclosures by Certain Investment Advisers and Investment Companies About ESG Investment Practices, SEC Press Release(2022.5.25.)
- SEC Proposes Rule Changes to Prevent Misleading or Deceptive Fund Names, SEC Press Release(2022.5.25.)
- Tracy Mayor, Why ESG ratings vary so widely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MIT Management Sloan School(2019.8.25.)
- UN PRI, ESG in credit ratings and ESG ratings(2023.3.6.)
-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KRX ESG 포털
MSCI 홈페이지
UN PRI 홈페이지

이슈페이퍼 23-19-①

「ESG 채권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한영수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ISBN 979-11-92875-45-3

95360

